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관련 Q & A ③

5. 지도 · 점검 등 기타 사항

<5-1>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 포장방법에 관한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어떤 점에 착안하여 점검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과대포장제품은 일반적으로 특정기념일이나 행사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출시되고 이후에 사라지는 특성이 있어 과대포장제품이 출시되는 시기에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대포장제품이 출시되는 시기와 대상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대포장제품에 대한 지도점검시 착안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류

- 단위제품인 경우에 있어서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위반사례가 많음
- 포장공간비율 위반은 양주제품의 경우 고정재를 합성섬유재질의 천을 고정재 위에 깔고 제품을 진열한 경우 복합재질로 사용한 것으로 포장공간비율을 5% 감하여 주게됨으로 기준 초과의 개연성이 큼

과대포장 발생시기	일 시	종점점검 대상품목
설 변동	주류(양주, 민속주세트 등), 건강·기호식품류(홍삼, 꿀 등), 신변집화류(지갑, 벨트세트 등), 가공식품류(육류 등 선물세트), 고급 농수산 특산품(갈비, 생선, 버섯세트 등)	
밸렌타인데이 2. 14	화장품류(남성용 화장품 등), 제과류(초콜릿 등), 신변집화류(지갑, 벨트세트 등) 등	
졸업 및 입학시즌 2~3월초	신변집화류(지갑, 벨트 등), 문구류(크레파스, 만년필 등 필기구), 화장품류 등	
화이트데이 3. 14	화장품류(여성용 화장품), 제과류(사탕 등), 신변집화류(지갑, 벨트세트 등) 등	
어린이날 5. 5	제과류, 완구·인형류(인형, 블럭세트 등), 문구류(크레파스, 기타 필기구 등) 등	
어버이날 5. 8	주류(양주, 민속주세트 등), 건강·기호식품류(홍삼, 꿀 등),	

스승의 날 5. 15	의약부외품류, 신변집화류(벨트, 지갑) 등
성년식 5. 19	화장품류(립스틱류) 신변집화류(지갑, 벨트 등) 등
하계휴가시즌 7~8월	화장품류, 가공식품류, 의약부외품류 등 휴가용품
추석 변동	주류(양주, 민속주세트 등), 건강·기호식품류(홍삼, 꿀 등), 의약부외품류, 신변집화류(벨트, 지갑 등), 가공식품류(육류 등 선물세트), 고급 농수산 특산품(갈비, 생선, 버섯세트 등) 등
빼빼로데이 11. 11	제과류(빼빼로 등), 화장품류, 신변집화류(지갑, 벨트 등) 등
크리스마스 12. 25	제과류, 완구류, 문구류(인형, 블럭세트 등), 화장품류, 신변집화류(지갑, 벨트 등) 등
연말연시 12월말 ~1월초	주류(양주, 민속주세트 등), 건강·기호식품류(홍삼, 꿀 등), 의약부외품류(세제 등), 신변집화류(벨트, 지갑 등), 가공식품류(햄세트 등 선물세트), 고급 농수산 특산품(갈비, 생선, 버섯세트 등)

- 포장횟수는 단일제품으로 제품을 사각케이스에 포장한 뒤 다시 포장지 등을 사용하여 재포장한 경우에 위반사례가 많음

2) 제과류

-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의 기획상품으로 나온 사탕, 초콜렛류에서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초과 사례가 발생
- 포장공간비율 위반은 1차 포장을 한 단위제품에서 고정재가 필요없음에도 고정재를 사용하여 포장한 경우에 발생
- 포장횟수 위반사례는 초콜릿류를 연결된 받침접시 위에 다시 아트지(또는 필름)형태의 받침접시를 놓고 그 위에 제품을 진열하고 상자로 포장한 것으로 3회 포장에 해당

3) 건강보조식품

- 포장횟수 위반은 종이나 플라스틱 원통형의 용기내에 은박포장으로 차(가루형태)를 포장하여 넣고 이를 종이박스에 재 포장한 것은 3회, 이 종이상자를 포장지로 다시 포장하면 4회가 되어 위반사례 발생
- 포장공간비율 위반은 동충하초나 홍삼 등의 포장에서 포장용기의 두께가 10mm 이상으로 과다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특히 제품상단 부위에 공간을 홍보용 문구를 넣은 박스형태로 처리한 것은 포장용적으로 여기에 과다한 공간이 있어 위반되는 사례 발생

4) 화장품류(향수제외)

- 기능성 크림(단일)등에서의 포장횟수 위반사례 발생
- 포장횟수 위반은 주로 단위포장 제품을 사각케이스에 포장한뒤 다시 필름 등으로 한번 더 전체 포장한 것에서 주로 발견됨.

5) 완구·인형류

- 부품과 부품사이에 고정재를 사용하여 간격을 넓게

포장하여 포장공간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위반사례 발생

6) 문구류

- 포장공간비율 위반은 주로 만년필의 경우로 케이스에 포장하는데 있어 만년필의 용적의 두 세배되는 제품에서 발생

7) 신변집화류

- 지갑·벨트세트를 포장하는데 있어 고정재를 사용하여 포장공간이 과도하게 큰 경우 위반사례 발생

8) 와이셔츠·내의류

- 포장횟수 위반이 박스형태의 포장용기 내에 필름을 이용하여 제품을 덮거나 씌운 형태에서 다수 발생

〈5-2〉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판명된 제품의 경우 남은 제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포장검사명령을 받아 포장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 성적서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남은 제품이 시중에서 재차 적발되는 경우 또다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제품을 출시하기 전 단계에서 과대포장여부를 자체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3〉

포장폐기물을 발생억제 관련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은?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예규 제224호, 2003. 1.20)에 의거 포장폐기물 발생억제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태료부과기준

작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후)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1.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1항)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3항)	300	300	300
		300	300	300

<5-4>

점검결과 제조자등이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점검한 자치단체에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요?

종전에는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위반한 제조자등이 관할 구역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위반내역을 통보하여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이행명령제도가 삭제되어 기준 위반시 즉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게 변경됨에 따라 위반사실을 적발한 자치단체에서 직접 과태료 처분이 가능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즉,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관련 제반기준을 위반한 제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가 종전 제조자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적발한 자치단체로 변경된 것입니다.

<5-5>

자치단체로부터 포장재질이나 포장방법에 대한 모장 검사명령을 받았지만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지 않아 기한내에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자치단체로부터 포장검사명령을 받은 경우 포장폐기물의발생억제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에 따라 20일 이내에 검사성적서를 검사를 명한 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검사성적서를 제출한 경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

한법률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일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계속 미이행하는 경우 또다시 검사명령을 받게되며 이 경우 재차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검사명령을 받은 경우 기한내에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6>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대상 사업장에서 연차별 줄이기 이행실적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요?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대상 사업장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비치 및 기록·보존 의무가 없음으로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자치단체가 이행실적을 제출도록 하였을 때 이행실적을 제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합성수지재질로된포장재의연차별줄이기기준의이행여부확인및줄이기방법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에 따른 이행실적을 작성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7>

자치단체에서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이행실적을 제출하려는 공문을 받고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대상 사업장

이 자치단체로부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및 합성수지재질로된포장재의 연차별줄이기기준의이행여부확인및줄이기방법등에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연차별 줄이기 이행실적을 제출 토록 기한을 정하여 요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5-8〉

전기용품 포장용 완충재는 일정 포장용적이하의 제품에 대하여 발포폴리스티렌 재질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연간 실적으로 점검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 제품에 대해 이행여부를 점검해야 하는지 여부?

전기용품 포장용 완충재는 포장용적에 따라 발포폴리스

티렌 포장용 완충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연간 실적으로 이행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개별 제품의 포장용 완충재 사용여부를 점검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연중 시중에 시판되는 제품을 점검하여 규칙에서 정한 포장용적 이하의 제품에 발포폴리스티렌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일 제품이 다른 지역, 다른 판매장소에서 적발된 경우에도 또다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점검시 줄이기 기준 준수여부는 제품의 제조일을 기준으로 하며, 수입된 제품의 경우에는 수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발전축

뜻깊은 창립이 무궁한 발전과 번영의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성판지(주)
대표이사 오영석

11월 4일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발전축

뜻깊은 창립이 무궁한 발전과 번영의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유진판지공업(주)
대표이사 문원식

12월 12일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